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84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8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2항 중 “별표 1 제28호”를 “별표 1 제5호나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해당 물질의”을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이하 “검토신청서”라 한다)”로,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를 “검토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별지 제3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서”로, “통지하여야”를 “서류의 보완·조정을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료”를 각각 “서류”로, “제4항”을 “제7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4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1호”를 “법 제24조제5항제1호”로,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제5항제2호”로,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각각 “검토결과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제5항제2호”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6항”을 “법 제28조제7항”으로,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날”을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8조제7항”을 “법 제28조제8항”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인증”을 “본인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수급인”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공사·보수.”를 “공사·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전문가들”을 “전문가 또는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61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를 “제출자에게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 중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합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유출·누출 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가목2)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를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로 한다.

별표 6의2 비고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너목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호 더목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⑧ 확인내용란 중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을 “기준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2]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종별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4. 허가물질 허가 및 재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5.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6.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7. 유독물질 수입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8.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9.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10.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1.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9,000원	7,200원
12.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9,000원	7,200원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30,000원	27,000원
1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000원	18,000원
15.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	13,000원	11,700원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	9,000원	7,200원
1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13,000원	11,700원
18. 취급시설의 검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및 안전진단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비고 :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신청 구분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결과 확인	종류 []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기관
	대상 공장(공정)	심사통지일
	대상 물질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의 심사결과 통지 후 변경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변경된 도급계획서 1부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 는 경우 7,2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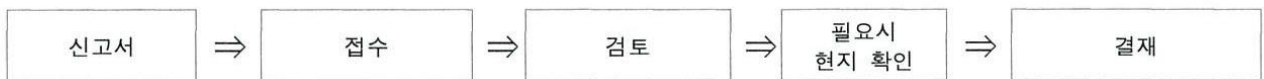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시 제출한 내용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2.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기·수시검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실이 운영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작성·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의2·제5호 중”으로 한다.

제2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의 부정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날부터 3년 까지